

2022년 D·N·A 이어달리기 프로젝트

참여기업 모집공고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, D·N·A(Data, Network, AI) 기술을 융합 및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「D·N·A 이어달리기 프로젝트」를 모집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2년 5월 23일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 모집 개요

- 사업명 : D·N·A 이어달리기 프로젝트
- 지원규모 : 10개 내외 기업 총 250,000천원
- 모집기간 : `22.05.23.(월) ~ `22.06.09.(목)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`22.11월 (최대 5개월)
- 지원대상 및 조건

: 범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제품화, 기술지원, 사업화 등을 지원받은 ICT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D·N·A 기술 도입으로 디바이스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자 하는 중소·스타트업

: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으로 D·N·A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해당 제품/서비스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

기초연구단계 (TRL 1~2)	실험단계 (TRL 3~4)	시작품단계 (TRL 5~6)	실용화 단계 (TRL 7~8)	사업화 단계 (TRL 9)
▶ 기초이론 ▶ 개념정립	▶ SW 모델링 ▶ 연구 시제품 (프로토타입)	▶ 서브 시스템 ▶ 시스템 시작품 (파일럿규모)	▶ 신뢰성·수요기관 평가 ▶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▶ 기 개발 기술고도화	▶ 본격적인 사업화양산 ▶ 시장 개척·확대 ▶ 품질 관리

※ 기술성숙도(TRL: Technology Readiness Level):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단계별 정의를 내려 기술개발단계를 1부터 9까지 표현

□ 주요지원 내용

- 지원금 : 10개 기업, 기업당 최대 2,500만원
※ 지원금은 과제 협약이후 일괄 지급(최종평가 이후 회계법인 정산)
- 디지털 오픈랩 인프라 활용 및 사업 연계 기회 제공

2 세부 내용

□ D·N·A 기술 도입 가이드(안)

○ 기술별 세부내용

- (Data) 데이터 추출,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시각화, 결과 산출 등
- (Network) 5G 기반 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 제작 등
- (AI) 인공지능 학습능력 개선, 활용성개선 기술개발, 알고리즘 개발 및 향상 등

구 분	지원내용
데이터 추출	- 웹데이터 추출 및 CSV, API 변환 등
데이터베이스 구축	- 데이터 가공 및 분석 후 관리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
데이터 취득	- IoT, mobile 등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, 영상, 텍스트 획득
데이터 가공	- 데이터 라벨링, 분류, 포맷 변경, 변형 등
모델 생성	- 반복 학습을 통한 화면인식, 음성분석, 상황추론 등 알고리즘 생성
결과 산출	- 소스코드, 보고서 등 디바이스 적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- 수요자 맞춤형 결과물 산출 및 제공
시각화	-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효과적 정보 제공
5G 상용화	- 5G 기반 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 제작 지원
AI 기술개발	-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개발 및 향상연구 등

※ 상기내용은 분야별 지원 가능한 세부 내용을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예산 한도 내 (D.N.A 관련 필수) 지원가능

※ 위탁개발 진행시 예산 증빙자료 제출필수(전문업체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 등)

□ 예산 지원항목

구 분	지원금 사용 용도
연구시설·장비비	디바이스에 D·N·A 기술도입을 위한 장비 임차비
연구재료비	D·N·A 기술도입을 위한 디바이스 개발/변경에 필요한 재료, 소모품
위탁연구개발비	D·N·A 기술 전문업체 위탁개발비
연구활동비	D·N·A 기술도입에 필요한 인증 등 제품관련 수수료, 위탁회계수수료, 이행보증보험료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접적 수수료

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용도(제20조 제1항) 참조 [붙임2]
- ※ 지원금은 과제 선정이후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- ※ 과제 정산 시 지정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 반드시 산정(연구활동비)

□ 운영 프로세스

추진절차	내 용	추진일정
↓		
혁신 디바이스 (수혜기업) 모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홈페이지 지원사업(https://digitalopenlab.kr) 공고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	~ `22.06.09.
↓		
지원기업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(1단계 서류, 2단계 발표) 	`22.06월 中
↓		
지원협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기업 지원과제 협약 체결 • 킥오프 미팅 개최 	`22.06월 中
↓		
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 일괄교부 	`22.06월 말
↓		
사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 선정 과제 수행 	협약일 ~ `22.11월 중순
↓		
사업비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	11월 말
↓		
최종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 수행내용 및 결과물 최종평가 	11월 말

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3 선정평가

□ 평가개요

- 평가방법 :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

- 1단계 : 모집기간 내 접수된 과제에 대해 서면평가(필요시)
- 2단계 : 1단계 선정 과제 대상 발표평가

○ 선정기준

- 1단계 : 평점 60점 이상, 고득점 순 발표평가 과제 2배수 이내 선정
- 2단계 : 평점 60점 이상, 고득점 순 최종 지원과제 선정

□ 세부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
기업역량 및 과제이해도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기업역량) 기술개발 전문 인력 보유 및 기업 전문성 ▪ (적정성) 사업목표, 범위, 추진전략 등 도달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▪ (부처 연계성) 범부처 및 지자체 지원이력 및 본 지원을 통한 기존 제품/서비스의 연계효과
기술개발 수행역량 (4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수행역량) 해당분야 기술개발 가능 자체역량 보유 여부 또는 외부 위탁 연구개발 활용 계획 ▪ (고도화) 보유 디바이스에 대한 D·N·A 기술도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
시장성 및 경쟁력 (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시장성) 시장분석의 합리성, 시장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▪ (필요성) 사용자 입장의 필요성 및 편리성 여부 등
소계	100%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(<https://digitalopenlab.kr>) 접수
- 제출기간 : ~22.06.09.(목)까지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세부내용 및 발급처
1	전문기업 신청서, 사업 참여 협약 및 실적증명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[서식1~4]
	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	[별첨1~3]
2	법인등기부등본(해당시)	http://www.iros.go.kr
3	사업자등록증	www.hometax.go.kr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

5	표준재무제표증명	* 최근 2년 내 서류('20년 ~ '21년) * 세무사 발행본 인정(날인 必) * 1년 미만 스타트업 제외
6	중소기업 확인서	sminfo.mss.go.kr
7	실적증빙 서류	* 회사 소개서 및 제품 카달로그, 지식재산권 등
8	위탁과업 증빙서류(해당시)	* 위탁과업지시서 * 위탁사 견적서

5 유의사항

□ 제외대상

- 제출서류 미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

- '중소·벤처기업'이 아닌 기업(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)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 - 신청 마감일 기준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 - 신청 마감일 기준, 휴·폐업,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
 -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참여제한 중인 자
 - 경기도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제한 기업
 -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 -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위반 기업
 - 협약시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
- ※ 보증보험 가입 조건 미달 시 최종선정에서 제외되며, 보험료는 사업비로 지출가능

□ 추가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및 혁신법 하위규정에 의거하여 수행
-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 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- 제출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, 제출자료 누락,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, 신청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
-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

- 지원기업과 위탁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,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,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

6 문의처

e-mail : thfk3230@gsa.or.kr

telephone : 031-710-8713 (GBSA 미래기술진흥팀)

연구개발비 사용용도(제20조제1항 관련 발취)

1. 직접비

항목	사용용도
다. 연구시설 · 장비비	2) 연구시설·장비 임차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임차비
라. 연구재료비	1) 연구재료 구입비: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) 연구개발과제 관리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) 연구재료 제작비: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비용
마. 위탁연구 개발비	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
아. 연구활동비	가)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: 기술·특허·표준 정보 조사·분석, 원천·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)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: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